##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34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김종양·조지연·강선영

고동진 • 김위상 • 최은석

김성원 · 정연욱 · 양부남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 거함(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 또한,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안 제4조제2항제3호)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안 제18조제2항제1호) 민간경비산업의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법률 제 호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를 "포함하여"로 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를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 제7조제5항 단서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생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	②		
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u>교육할</u>	3포함하여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	5		
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u>&lt;단</u>	<u>다만, 경</u>		
<u>서 신설&gt;</u>	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		
가 등) ① (생 략)	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 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 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 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 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 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 2. · 3. (생략)
- ③ ~ ⑧ (생 략)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②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
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u>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u>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u>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u>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3. ~ 8. (생 략)
- ②·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는
o (청체코 가O)

- 3. ~ 8.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